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2. 19 선고 2018나40314(본소), 2018나40321(반소)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손해배상(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우 담당변호사 문흥수

변론 종결 2019. 1. 18

판결선 고 2019. 2. 19

제1심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9. 20. 선고 2018가단513(본소), 2018가 단208836(반소)

판결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1987 . 3. 25. 접수 제 7097 호로 마친 근저 당권설정 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 행하라.

나. 반소원고는 피고에게 64, 575, 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 6. 2. 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송달일까지는 연 5%의,그 다음날부터 다값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구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3면 제16행의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이 법원" 을 "제 1심법원" 으로 고치고, 제 4면 제 19행의 " 상당하다" 뒤에 "(망인이 피고의 동의없이 임의로 원고에게 이사건 분할 전각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 전등기를마쳐주었다는 피고 주장에의하더라도 늦어도 원고에 대한 위 소유권이 전등기 시점부터는 망인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의 이행불능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봄이 상당하고, 피고 주장처럼 분할된 충주시 J답 12㎡와 K답 1533㎡가 수용된2016 . 5. 17. 또는 원고가 그 수용보상금을 수령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기산된다고보기는 어렵다)"를 추가하고,제5면 제U행의 "어렵고," 뒤에 "당심에서 제출된 을 제4호 증의 기재나 당심증인 L의 증언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정판사 방태경판사 김영하

별지